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480 호

1975.1.25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434 호 : 서울특별시시민회 관직계승개정규칙 3

제 1435 호 : 서울특별시소방서직계승개정규칙 4

제 1436 호 :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직계승개정규칙 6

제 1437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 7

제 1438 호 :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 8

제 1439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창직계승개정규칙 11

제 1440 호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소직계 12

제 1441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 1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지체중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 1. 25

◎서울특별시규칙제 1434 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지체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지체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목을 "하부기구"로 하
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장 밑에 건축분야 담당 3인, 기
계분야 담당 2인, 전기분야 담당 3
인과 미술분야 담당 2인의 전문위
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지방계약직
원으로 보한다.

제4조 제1항중 "업무제, 관리제"
를 각각 "서무제, 자재제"로 하
고, 동조 제2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무제

가. 인사, 문서, 관인

나. 당직 및 근무에 관한 사항
다. 건립 자문위원회의 운영
라.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예산
마. 관내 다른과, 세외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재제

가. 관급자재수급 및 관리
나. 의자에 관한 사항

3. 경리제

가. 회계 및 경리
나. 금전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다. 세입사무

라. 불용물관리

마. 용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술과) ①기술과에 건축계,
전기계와 기계계를 두고 건축계장
은 지방건축기사로, 전기계장은 지
방전기기사로, 기계계장은 지방기계
기사로 보한다.

②기술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계

가. 회관건축계획 및 부속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자재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훈련

다. 과내 타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계제

가. 전기시설을 제외한 수도·위생·냉방·난방·소화 기타 건축물내 부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

3. 전기제

가. 전기배선, 변전설비, 조명 기타 전기시설에 관한 계획설계 시공 및 감독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건축

기계·전기 및 미술분야의 감리에

대하여 관장을 보좌한다.

<별표 1> 소방서사무분장 중 방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소방서지재증개정규칙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 1. 25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35 호

서울특별시 소방서지재증개정규칙

제 2 조제 1 항중 "방호과와 소방과" 물 "소방과와 방호과"로 하고, 동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방과에 소방제와 장비제물 두고, 방호과에 방호제, 지도제와 훈련제물 두며, 계장은 소방경위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과 별	제 별	분 장 사 무
방호과	방호제	1. 경방계획 및 화재진압 2.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및 단속 3. 위험물 취급주임 교양

과 별	계 별	분 장 사 무
		4. 고압가스신고업무처리 및 단속 5. 의용소방대운영 6. 소방용수리시설의 유지관리 7. 수난구조 협조 8. 방호관계민원서류의 처리 9. 소방법 위반사건의 조사 및 처리 10. 화재현장조사 및 통계분석 11. 화재방어검토회의 12. 화재증명에 관한 사항 13. 국내 타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지도계	1. 화재예방계획수립 2. 방화사상계몽선전 3. 화재경계지구 지정승인 제청 4. 방화진속지도 5. 건축허가동의 6. 화재예방관계 민원처리 7.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문련계	1. 소방지휘서수립에 관한 사항 2. 소방문련지도검열에 관한 사항 3. 방공소방문련에 관한 사항 4. 소방검사 및 소방시설 축전지도 5. 방화관리자의 지도 및 교양 6. 소방용기계기구 및 약품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별표 2> 소방관파출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성동소방서란중 성수소방관파출소 및 신당소방관파출소 관할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영동소방관파출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성 동 소 방 서	성수소방관 파 출 소	성동구송정동 37 - 2	성동구중 성수 2가동, 화양동, 중곡동, 구의동, 자양동(신천, 잠실동 제외)
	신당소방관 파 출 소	성동구신당동 292 - 47	성동구중 신당 1(무학동), 2, 3, 4, 5, 6, 7 동, 금호 1, 2, 3, 4 가동. 옥수동
	영동소방관 파 출 소	성동구영동 제 2 지구 905 구 회 1 호	성동구중 압구정동, 학동, 신사동, 논현동, 잠원동, 반포동, 서초동, 역삼동, 우인동, 양재동, 원지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자곡동, 포이동, 율현동, 검곡동, 세곡동, 신원동, 내곡동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위생처리장지제증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 1. 25			<p>◎ 서울특별시규칙 제 1436 호</p> <p>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지제증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지제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에 북부위생처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명 칭	위 치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복부위생 처 리 장	서울특별시고양군원남면도 내리 674 번지 1 호	나. 소속직원의 인사, 급여,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 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5. 1. 25 ◎서울특별시규칙 제 1437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 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인사제"를 삭제 하고, 동조 제 2 항 제 1 호중 나목 내지 차목을 마목 내지 파목으로 하고,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 2 호를 삭제 하고, 제 3 호를 제 2 호로 하며, 동	다. 소속직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 한 사항 라. 소속직원의 비밀취급인가 및 취 소에 관한 사항 차. 세입금(운수세입금제외)의 징수 및 총괄 제 5 조 제 2 항 제 2 호에 마목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마. 승차권의 제작감독 제 6 조 제 2 항 제 2 호중 차목을 다음 과 같이 한다. 라. 운수세입금의 징수 및 총괄 제 8 조 제 1 항중 "운영제"를 삭제하 고 "공사 1 제", "공사 2 제"를 "공사제"로 하며, 동조 제 2 항 본 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 제 1 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 3 호를 삭 제하고 제 4 호를 제 3 호로 하며, 동 호중 "공사 1 제, 공사 2 제"를 "공 사제"로 한다. 1. 계획제 가. 지하철건설의 기본조사 및 계획 나.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의 계획	

다.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의 예산운용
바. 공사진도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

마. 토목공사에 따른 보상 및 배상

바. 소관업무에 따른 기술에 관한 제 기준의 선정

사. 소관자재의 수급계획 및 준비요구

아. 지하철건설에 따른 청원·진정의 처리

자. 공사유관기관과의 협조

사. 과내 타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 1. 25

◎ 서울특별시규칙 제 1438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 제 1 호중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청내 다른국,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5 조 제 2 항 제 1 호중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로구·중구·마포구·용산구를 제외한다)

제 7 조 제 2 항 단서와 제 8 조 제 2 항 단서중 "구청장이 결정한다"를 각각 "과장이 행한다"로 한다.

제 9 조중 "부녀제"를 각각 "부녀아동제"로 한다.

제 11 조 제 2 항 제 1 호중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로구·중구에 한한다)

제 12 조 제 3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제 1제와 건축제 2제의 분장사무는 구역별로 분장하되, 구역의 지정은 과장이 행한다.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마포구·용산구에 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수도제1과) ①수도제1과에 관리제, 과정제1제와 과정제2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수사로 보한다.

②수도제1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과정제1제와 과정제2제의 분장사무는 구역별로 분장하되, 구역의 지정은 과장이 행한다.

1. 관리제

가. 우수도행정의 종합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나. 청중단속 및 당직(별도 청사에 한한다)

다. 수도사업특별회계소속공무원의 급여, 후생 및 고용원(임시직을 포함한다)의 인사, 복구에 관한 사항

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 및 용도

마.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차량의 유지관리

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구세입 및 조정의 총괄

사.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금의 수납

아. 급수조례위반자처분

자. 수도사업특별회계 봉화계산서의 수불·보관 및 납부 발송의 발급에 관한 사항

차. 양수기의 수복·교체

카. 과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과정제1제, 과정제2제

가. 급수사용로의 조절계획 및 통제

나. 수도전의 관리 및 양수기
점검

다. 급수사용량의 점검

라. 급수조례위반자의 적발보고
및 가산금의 과징

마. 급수중지, 때건과 사후관리
및 동해제

바. 공설공용 수전의 관리

사.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금의
징수계획 및 통제

가. 수도사업특별회계세수입금의
제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제산압류

자. 수도사업특별회계세수입금의 수
납소인 및 수납부 관리

차. 수도사업특별회계공과금의 교
부 및 청구

카. 수도사업특별회계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처리

타. 급수사용료 관제민원 및 이
의 신청의 처리

제 14 조 (수도제 2 과) ①종로구·중구
마포구·용산구의 수도제 2 과에는
공무제와 보수제를 두고, 기타 구

에는 공무제 1 제와 공무제 2 제를
두며, 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
다.

②수도제 2 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무제
와 보수제 그리고 공무제 1 제와
공무제 2 제의 분장사무중 공통되는
사항은 각각 구역별로 분장하되,
구역의 지정은 과장이 행한다.

1. 공무제, 공무제 1 제, 공무제 2 제
가. 양수기의 교체업무(신규 및
동파양수기)

나. 소화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
리

다. 누수보수 및 누수탐지(공무
제 1 제, 공무제 2 제에 한한다)

라. 무허가 및 사전급수공사의
단속

마. 배 급수시설 및 급수장치의
신설·개량과 유지관리(공무제
1 제, 공무제 2 제에 한한다)

바. 소매수지(자수조) 및 가압

펌프장의 운영관리 (공무제 1 제, 공무제 2 제에 한한다)

사. 급수조정 및 특별급수에 관한 사항 (공무제 1 제, 공무제 2 제에 한한다)

아. 특수가압시설, 시설수도 및 심정호의 관리 (공무제 1 제, 공무제 2 제에 한한다)

자. 급수에 관한 민원처리 (공무제 1 제, 공무제 2 제에 한한다)

차. 각종급수업무의 통제

카.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공무제, 공무제 1 제에 한한다)

2. 보수제

가. 누수보수 및 누수탐지
나. 배·급수시설 및 급수장치의 신설, 개량과 유지관리

다. 소배수지 (저수조) 및 가압 펌프장의 운영관리

라. 급수조정 및 특별급수에 관한 사항

마. 특수가압시설·시설수도 및 심정호의 관리

바. 급수에 관한 민원처리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장치계증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 1. 25

○ 서울특별시규칙 제 1439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장치계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장치계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지방행정서기관 또는 지방공업기정"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기과"로 한다.

제 4 조를 삭제한다.

제 7 조중 "기술담당관"을 "관리계장"으로 한다.

규칙중 "정비장"을 각각 "정비사업소"로 "창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 2. 1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조직제 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출 인

1975.1.25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40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조직제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소의 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리과) ① 관리과에 서무제와
자재관리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 무 제

- 가. 보안업무 및 청사관리
- 나. 문서관인관수
- 다. 인사, 복무, 예산, 급여 및
후생
- 라. 회계 및 용도
- 마. 공사소요자재의 구입에 관한

사항

바. 비품관리

사. 공사지내 환경조성사업등의
계획 및 집행

아. 시건설주택의 종합통제

자. 소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재관리제

가. 공사용자재의 수급계획 및
출납보관

나. 자재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관한 사항

다. 우수자재 연구 및 보관
라. 조립식주택의 연구

마. 민간건축자재생산의 지도육성

제 3 조 (공사 1 과) ① 공사 1 과에 공사
1 계, 공사 2 계와 설비계를 두고
공사 1 계장과 공사 2 계장은 지방건축
기과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과 또
는 지방전기기과로 보한다.

② 공사 1 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 1 계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속
 시유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수리공사의 계획, 설계와 시공
 감독

나. 국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사 2 계

가. 특수건축물 및 특명사항의
 시공감독 및 보수

3. 설 비 계

가. 시유건축물 및 특수건축물에
 대한 전기, 수도, 위생, 냉난방,
 기타 부대시설의 계획, 설계, 시
 공감독 및 보수

나. 시유 건축물 대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감독

제 4 조 (공사 2 과 1) ①공사 2 과에 공사
 1 계, 공사 2 계와 설비계를 두고 공
 사 1 계장은 지방로목기과로 공사 2 계
 장은 지방건축기과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전기기과로
 보한다.

②공사 2 과의 제1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사 1 계와
 공사 2 계의 분장사무중 공통되는
 사항은 지역별로 분장하되 지역의
 지점은 과장이 행한다.

1. 공사 1 계

가. 제계발사업지구내 시영주택건설
 의 관한 자료의 종합정리와
 관련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제계발 사업지구내 시영주택
 건설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제계발 사업지구내 시영주택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라. 국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사 2 계

가. 제계발 사업지구내 시영주택
 건설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제계발 사업지구내 시영주택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기타 제계발지구내 시영주택
 에 관한 기술사무

3. 설 비 계

가. 재개발 사업지구내 시영주택의 전기, 수도, 위생, 냉난방, 기타 부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재개발 사업지구내 시영주택 시설보수 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제 5 조 (공사 3 과) ①공사 3 과에

공사 1 계, 공사 2 계와 설비계통 두고 공사 1 계장과 공사 2 계장은 지방건축 기좌로 설비계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전기기과로 보한다.

②공사 3 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사 1 계와 공사 2 계의 분장사무중 공통되는 사항은 지역별로 분장하되 지역의 지정은 과장이 행한다.

1. 공사 1 계

가. 재개발 사업지구외의 시영주택 건설에 관한 자료의 종합정리와 관련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재개발 사업지구외의 시영주택 건설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재개발 사업지구외의 시영주택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라. 파내 다른계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사 2 계

가. 재개발 사업지구외의 시영주택 건설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재개발 사업지구외의 시영주택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기타 재개발지구외의 시영주택에 관한 기술사무

3. 설 비 계

가. 재개발 사업지구외의 시영주택의 전기, 수도, 위생, 냉난방 기타 부대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재개발 사업지구외의 시영주택 시설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제 6 조 (감리단) 감리단은 설계 시공 및 위생설비 분야의 감리에 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찬 인

1975. 1. 25

◎서울특별시규칙제 1441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중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령집의에 대한 해석 및 심사(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 8 조 제 1 항중 "개발 3 제"와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 2 항 제 1 호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2 호중 "도시교통, 관광운수"를 "도시계획, 주택, 건축 기타 건설분야"로 하며, 동항 제 3 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 4 호를 제 3 호로 한다.

다. 도시교통, 관광운수,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연구

제 9 조중 "안전담당관과"를 삭제하고, "안전담당관과 방호담당관은"을 "또는"으로 한다.

제 10 조 제 2 항 제 1 호중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3 호중 라목을 삭제한다.

다. 중무계획사업의 자료수집 및 제원의 획득유지와 심사분석
마. 한강안전관리대의 운영, 지도 및 감독

제 11 조를 삭제한다.

제 12 조 제 2 항 제 1 호중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전시법령 정비자료의 수집

제 17 조 제 1 항중 "교과계획"인 삭제도제"를 "외교과제"로 하고,

동조 제 2항 제 1호중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4호중 마목 내지 아목을 차목 내지 타목으로 하며, 바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5호를 삭제한다.

- 나. 인사제도의 기획연구 및 운영
- 바. 공무원 교육훈련
- 사. 공무원의 교양 및 자질향상
- 아. 위학교육에 관한 사항
- 자. 공무원의 해외파견자 추천

제 19조 제 1항중 "민원처리제와 문서관리제"를 "와 민원처리제"로 하고, 동조 제 2항 제 1호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바목 내지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3호를 삭제한다.

- 마. 문서의 보관, 보존문서의 열람 내출 및 문서참고관리
- 바. 문서의 면철 및 폐기문서정리
- 사.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및 예규문서의 번호부여와 원문 보관

아. 보존문서,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의 촬영관리

자. 티. 티실 및 테렉스철 운영차. 자체등사실 운영

카. 각종 유인 및 반간물의 통계

제 21조 제 1항중 "세원계"를 "과정계"로, "세원계장"을 "과정계장"으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제 1호 및 제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 정 계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시세정의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통제

다. 시 세입총괄 및 원계

라.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마. 시세입 통제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부금 지출에 관한 사항

사. 시세입점수의 실적평가

아. 전시 세정의 기본계획, 조정 및 통제

자. 국내 다룬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과 정 제

가. 유통업소의 중별 지정승인
나. 유통음식세의 과세표준액 권형
조정

다. 유통업소의 경영실태 분석
라. 시세과징 계획 및 배시
마. 시세판계질의 조복
바. 시세입 결손처분 승인
사. 시세대장 정비에 관한 사항
아. 시세 과세표준액 승인신청
자. 세외수입의 총괄과 통제보고
차. 세외수입에 관한 계획 수립
가. 세외수입 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
타. 세외수입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제 21 조의 2 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1 조의 2 (세무조사과) ①세무조사
과에 조사1계, 조사2계와 평가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세무조사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1 계

가.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
세, 목적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

나. 계소관 세목에 대한 계조사
결정과 소원심사청구 및 소송
업무

다. 법인 실사업무

라. 계소관 세목에 대한 탈세정보
처리와 세무사찰

마. 과내 나른계의 수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사2 계

가. 유통음식세, 면허세, 마권세, 노
숙세, 주민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

나. 계소관 세목에 대한 계조사
결정과 소원 심사청구 및 소
송업무

다. 계소관 세목에 대한 탈세정보
처리와 세무사찰

3. 평 가 계

가. 토지의 등급실정과 수정에
관한 사항

나. 건물의 중별 실정과 수정에

<p>관한 사항</p> <p>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p> <p>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무 조사에 관한 사항</p> <p>마. 상각자산과로 조사에 관한 사항</p> <p>바. 무신고 이동지에 대한 처리 사항</p> <p>사. 부동산가격 통계에 관한 사항</p> <p>제 23조 제 1항중 "재산총괄제, 재산처분제와 재산감정제"를 "재산관리제"와 재산처분제"로 하고, 동조 제 2항 제 1호중 "재산총괄제"를 "재산관리제"로 하며, 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 3호를 삭제한다.</p> <p>사. 취득, 매각, 교환, 보상가격의 사정 (각 회계포함)</p> <p>아. 시유재산의 대부료 및 차입 재산의 임차료 사정</p> <p>자. 부동산 시가조사</p> <p>차. 시유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p>	<p>사항</p> <p>가. 시유창고의 관리</p> <p>제 24조 제 1항중 "식품위생제와 환경위생제"를 "와 위생제"로 하고 동조 제 2항 제 1호중 바목을 사무으로 하며,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 3호를 삭제한다.</p> <p>바. 일반묘지 및 화장장의 지도</p> <p>2. 위 생 제</p> <p>가. 각종 위생업소의 허가, 단속 및 위생검찰</p> <p>나. 이용사, 미용사, 조리사의 자격 부여 및 지도감독</p> <p>다. 시민영양의 개선지도와 식생활의 지도</p> <p>라. 부정식품 및 보건범죄사범의 단속</p> <p>마. 보건소의 위생행정에 관한 지도 감독</p> <p>바. 유기장의 허가 및 지도단속</p> <p>제 30조 제 1항중 "사무제, 작업제와 장비제"를 "청소행정제와 장비제"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제 1호를</p>
---	---

다음과 같이 하며, 제 2호를 삭제하고, 제 3호를 제 2호로 한다.

1. 청소행정제

가.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나. 오물수거수수료의 과징

다. 진개매각대 수수료의 과징

라. 진개처리 및 처분장의 조정

마. 청소구역의 재정

바. 청소인부의 감독

사. 청소장비 및 용품의 구입

아. 오물취급업의 허가

자. 오물불법처분의 감시 및 단속

차. 시민청소관념의 계몽

카. 진개차량 각종사고의 보상 및 소송

타. 진개수거에 관한 청원서처리

파. 국내 다른과 및 파내 다른
계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31조 제 1항중 "처리제" 및
"과 처리제장"을 삭제하고, 동조
제 2항중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 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
3호를 제 2호로 한다.

1. 업 무 제

가. 분뇨수거처리의 종합계획 수립

나. 분뇨차량의 각종 사고보상
및 소송

다. 분뇨수거료의 과징

라. 분뇨수거장비의 구입, 정비
및 용품구입

마. 분뇨불법처분의 감시 및 지도
단속

바. 분뇨수거에 관한 민원처리

사. 분뇨저장탱크 및 공중변소의
시설관리 제책

아. 액상폐기물 정화조의 청소, 시
공, 설계업에 관한 등록 및
등록취소와 사후관리

자. 분뇨수거작업의 지도

차. 분뇨처리업 허가 및 허가취소
와 사후관리 (액상폐기물 정화조
내부의 분뇨 및 오니의 처리업
에 한한다)

카. 실계속건물의 액상폐기물의
정화조 설비에 관한 협의

타. 액상폐기물 정화조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파.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34 조 제 1 항중 "중소기업제" 및 "중소기업제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 2 항 제 1 호중 아목 내지 차목을 타목 내지 거목으로 하며, 아목내지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2 호와, 동항 제 3 호중 마목과 타목을 각각 삭제하고, 제 3 호중 다목 내지 사목을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며, 동항 제 3 호 내지 제 5 호를 제 2 호 내지 제 4 호로 한다.

- 아.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자. 중소기업자금 지원
- 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 카. 수출진흥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 타. 수출관계 통계와 기타 수출 업무

제 35 조 제 1 항중 "연료제, 도시가스제와 연료개발제"를 "연료행정제, 연료지도제와 열관리제"로 하고,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료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료행정제

- 가. 연료수급 종합계획 수립
- 나. 석공탄 배정
- 다. 무연탄 수급조절
- 라. 연료대책위원회운영 (수도행정자문위원회)
- 마. 연료대책본부운영
- 바. 연료통계에 관한 사항
- 사. 산업동원자원 (유류연탄)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아. 과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료지도제

- 가. 연탄공장 지도감독
- 나. 무연탄 품질관리
- 다. 연탄출하중 관리
- 라. 연탄판매소 및 유통기구 단속
- 마. 지역 냉, 난방의 지도감독
- 바. 연료시설소운영의 지도감독

3. 열관리계

- 가. 열탄가스 위해방지
- 나. 열관리 지도
- 다. 열관리사 양성
- 라. 아궁이 개량보급
- 마. 개량연소가구기기 (전기, 무연탄) 제조면허 및 사후관리
- 바. 전기공사업체 면허 및 사후관리
- 사. 전기용품 제조면허 및 사후관리
- 아. 전열에 관한 사항
- 자. 자가용 전기공작물 인가
- 차. 전기주입 기술자의 자격검정

제 3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5조의 2 (도시가스과) ①도시가스과에 도시가스계와 고압가스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도시가스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가스계

- 가. 도시가스공장 건설 및 관리
- 나. 도시가스사업의 허가

- 다. 도시가스 시공업자의 지정
- 라. 도시가스공급지역의 지정 및 배관공사
- 마. 도시가스시공기 자체의 규격화
- 바. 도시가스 연소기구개발 및 보급
- 사. 도시가스사업소 운영의 지도 감독
- 아. 기타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
- 자.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고압가스계

- 가. 고압가스의 제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나. 고압가스 용기 및 부속기구의 제조와 수리
- 다. 석유류의 수급에 관한 사항
- 라. 유류 (윤활유, 구리스, 부레이크액 등)의 품질관리

제 36조 제 1항중 "농정계, 수산물계"를 "농수산계"로 "농정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수산물계장은 지방수산기과"를 "농수산계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수산기과"

로 하며, 동조 제 2항 제 1호중 "농정계"를 "농수산계"로 하고, 아목 및 자목을 너목 및 어목으로 하며, 아목 내지 거목을 다습과 같이 신설하고, 너목중 "(농산물 및 동가공업체"를 "(농수산물 및 동가공업체)"로 하며, 동항 제 2호를 삭제하고, 제 3호 및 제 4호를 제 2호 및 제 3호로 한다.

이. 어업 및 어선건조에 관한 사항

자. 수산용 자재의 수급조절 및 수자원의 조사

차. 수산증진 및 수산계조에 관한 사항

카. 수산단체의 지도 감독

타. 수산자재 생산의 지도 감독

파. 수산시설 및 관리

하. 수산시장 관리

거. 내수면 어업의 지도육성

제 37 조 제 1항중 "관리제"를 삭제하고, 동조 제 2항 제 1호중 아목 내지 차목을 따목 내지 거목으로 하며, 아목 내지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2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 3호 및 제 4호를 각각 제 2호 및 제 3호로 한다.

아. 정부 양곡의 보관, 관리 및 사고처리

자. 정부 양곡의 수불과 결산

차. 정부 양곡의 상출과 배출

카. 정부 양곡의 재고파악과 보관료의 확인

타. 정부 양곡의 수매

제 41조를 제 41조의 2로 하고,

제 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1조 (제 1, 2 담당관) 제 1 담당관은 경무, 보안, 교통, 경비, 방위와 통신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제 2 담당관은 수사, 형사, 정보와 외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경찰국장을 보좌한다.

제 57 조 제 1항중 "예방제, 홍보제도"를 "조사제"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제 1호 및 제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 3호를 삭제하고, 제 4호를 제 3호로 한다.

1. 방 호 제

가. 경방계획 및 화제진압에 관한

사항

나. 의용 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단속

라. 위험물 제조소등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지도

마. 위험물 취급주임 면허 및 적성검사

바. 고압가스 신고업무처리 및 단속

사. 소방수리의 유지관리

아. 과내 다른계의 주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 사 계

가. 소방법위반 사건조사 및 처리

나. 화재현장조사 및 처리

다. 화재통계 및 원인분석

라. 방화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마. 화재증명에 관한 사항

제 57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7 조의 2 (지도과) ①지도과에 지도계, 훈련계와 홍보계를 두고, 계장은 소방경정, 소방경감 또는

소방경으로 보한다.

②지도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 도 계

가. 화재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나. 소방감사에 관한 사항

다. 소방시설 축진에 관한 사항

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마. 건축허가 및 준공동의에 관한 사항

바. 건축 및 소방시설의 민원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아. 과내 다른계의 주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훈 련 계

가. 소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소방훈련 지도검열에 관한 사항

다. 민방공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라. 방화관리자 지도에 관한 사항

마. 방화관리자 강습 및 교양

바. 인명구조 훈련

3. 홍보 계

- 가. 소방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 나. 불조심 제동 및 지도
- 다. 홍보간행물의 배부
- 라. 소방홍보관계 민원처리
- 마. 소방설비사의 면허
- 바. 소방기구 판매업소의 허가 및 단속

제 59 조 제 1 항 중 "가로계획제와 재개발제"를 "와 가로계획제"로 하고, 동조 제 2 항 중 제 2 호에 라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 4 호를 삭제한다.

- 라. 재개발사업의 계획
- 마. 재개발사업 기본조사, 측량, 설계, 시공 및 감독
- 바.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 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아. 도시계획과 관련된 특수사업의 계획 및 집행
- 자. 정비대상 지역내 시설계획 및 조정
- 차. 민간인 재개발사업의

행정지원과 지도감독

제 63 조 제 1 항 중 "관계 1 계, 관계 2 계와 수납제"를 "용지 1 계, 용지 2 계와 주택관리제"로 하고, 동조 제 2 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 1 호 중 마목 및 바목을 삭제하고, 사목 내지 자목을 마목 내지 사목으로 하여, 동항 중 제 2 호 및 제 3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 호를 삭제한다.

다만, 용지 1 계와 용지 2 계의 분장사무는 구역별로 분담하되 구역의 지정은 과장이 행한다.

2. 용지 1 계, 용지 2 계

- 가.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하 이조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구·공유재산의 양수, 관리 및 처분
- 나. 동법에 의한 재산변동 사항의 승인 및 명의변경
- 다. 동법에 의한 재산대장의 정비 및 보관
- 라. 동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내의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

<p>다. 시영주택 전립 및 택지조성에 따른 사유지의 수용 및 보상</p> <p>바. 주택용지 및 정착용지의 취득 및 처분</p> <p>사. 주택용지 및 정착용지 재산대장의 정비 및 보관</p> <p>3. 주택관리제</p> <p>가. 주택비 특별회계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p> <p>나. 재산변동사항 및 명의변경의 승인</p> <p>다. 시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분양, 관리 및 명의변경</p> <p>라. 시영주택의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조정, 징수 및 총괄</p> <p>마. 시영주택에 관한 각종 납입금의 미납에 대한 제납처분 및 사후관리</p> <p>바.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납입금의 수납 및 청산</p>	<p>제 67 조를 삭제한다.</p> <p>제 71 조 제 1 항 중 "관광사업제와 관광지도제"를 "와 관광사업제"로 하고, 동조 제 2 항 중 제 2 호에 다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 3 호를 삭제한다.</p> <p>다. 관광자원의 조사통계 및 개발 라. 관광업체의 지도 감독 마. 관광협의 운영의 지도 감독 바. 관광업체 종사원의 교양지도</p> <p>제 7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74 조 (도로시설과) (1)도로시설과에 도로제, 교량제, 시설제와 조명시설제를 두고 도로제장, 교량제장과 시설제장은 토목기차 또는 지방토목기차로, 조명시설제장은 전기기차 또는 지방전기기차로 보한다.</p> <p>(2)도로시설과의 개별 준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도로제</p> <p>가. 일반도로(국도, 특별시도, 준용도로)와 도로부속물(다른제 주관은 제외)의 신설 및 확장에 따른 설계 시공 및 감독</p>
--	---

나. 신설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조사, 측량,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의 신설에 따른 설계, 시공 및 감독
 라. 과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교 량 계
 가. 도로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위사업으로서의 교량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대규모 교량공사와 이에 수반되는 접속도로의 설계, 시공 및 감독

3. 시 설 계
 가. 고가도로 입체교차로의 신설에 따른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위생횡단 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 차도, 지하광장)의 설계 시공 및 감독

4. 조 명 시 설 계
 가. 가로등과 도로부속물 조명시설의 설계, 시공, 감독 및 유지 관리

제 7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5 조 (도로보수과) ① 도로보수과에 도로관리계, 시설보수계와 도로보수계를 두고 계장은 토목기과 또는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

② 도로보수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관리계
 가. 도로 및 구거점용허가 용도 폐지 또는 공작물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협조 및 시공감독
 나.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공사의 감독
 다. 도로대장의 관리
 라. 과내 다른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시설보수계
 가. 교량, 고가도로 및 입체교차로 기타 도로시설물(조명시설을 제외한다)의 보수 및 유지관리

3. 도로보수계
 가. 포장도로의 개수에 따른 조사 측량, 설계 시공 감독 및 유지 관리
 나. 미포장도로의 포장 및 유지

<p>관리</p> <p>다. 건설사업소 및 역청사업소의 지도 감독</p> <p>라. 도로의 뚝수 설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p> <p>마. 긴급복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p> <p>제 76조 제 1항중 "하수시설계와 치수계"를 "와 하수시설계"로, "하수시설계장과 치수계장"을 "과 하수시설계장"으로 하고, 동 조 제 2항 제 1호 가목중 "및 하천", 제 4호 가목중 "및 치수"와 동조 제 2항중 제 5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 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 77조 (치수과) ①치수과에 치수계와 수방계를 두고 계장은 토목기과 또는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p> <p>②치수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치 수 계</p> <p>가. 한강종합개발계획과 토지 및 수자원이용 계획 및 조정</p> <p>나. 하천의 계수계획과 개량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및 감독</p> <p>다. 하천공유수변의 점용 및 사용허가 (매립면허 포함)에 따른 기술협조 및 시공감독</p> <p>라. 하천대장 관리</p> <p>마. 5.16광장관리</p> <p>바. 과내 다른 계의 주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수 방 계</p> <p>가. 뚝수해대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통제</p> <p>나. 하천의 인수 및 유지관리</p> <p>다. 침수지역 (외수)의 조사통제</p> <p>라. 수해통제와 요인분석</p> <p>마. 수해발생 사후대책의 조정 통제</p> <p>바. 해해대책위원회의 운영</p>
---	---

<p>제 78 조 제 2 항 제 1 호 중 나목 내지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나. 수도권 소관 4급이하 공무원의 인사조정 요청 및 구수도 제 1, 2 과 직원의 인사조정 방침 결정</p> <p>다. 수도권관리사업소 및 구수도행정 의 지도 감독</p> <p>라. 구수도업무처리의 조사확인</p>	<p>제 81 조 중 "정수계"를 "수질계"로. 동조 제 1 항 중 "제장은, 지방토목 기과"를 "수질계장은 지방화공기 과로 설비계량계장은 지방토목기과"로 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p>	